

기초교양 『사회봉사실천』 교과목 이수안내

1. 대상

-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

2. 근거

- 「졸업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3항
※ 『사회봉사실천』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
(단,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예외)

3. 학점이수 안내

1) 인정기관

- 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),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

2) 인정시간 및 인정일수

- 사회봉사의 이수시간은 **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,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, 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**

3) 이수절차

- ① 학생은 졸업 전까지, 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),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
- ②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
(※ 각 학과(부)에서는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취합하여 **지역사회서비스센터 업무협조전** 발송)
- ③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(21학점)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.

4)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

- 평가는 P/F(합격/불합격)으로 처리하되,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
 - ※ 지정된 기관에서 **30시간 이상 이수 시 "PASS" 처리**
(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)

- 학점인정 불가 사유
 - ① 총 3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②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**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**
 - ③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(활동지원금 등)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- ※ ②, ③의 사유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

4. 일정 및 제출방법 안내

- 일정

구분	제출기한	제출처	제출서류	비고
학생	2025. 11. 26(수) ~ 12. 14(일) 23:59까지	맞춤형학생역량 관리시스템	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	<u>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</u> 발급일 3개월 이내

- 문의: 통합행정실 및 지역사회서비스센터